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교구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규정 신설〉

■ 장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739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장철민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4. 11.
3. 회부연월일 : 2025. 4.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등을 어린이제품으로 정의하고, 어린이제품에 관한 안전기준 및 안전성조사,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등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칠판, 게시판 등 교구에서 다량의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사회적 논란이 되었으나, 이러한 교구는 현행 법상 어린이제품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교구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교구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교구를 사용하는 관계 기관이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칠판, 게시판 등 교구의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교구를 사용하는 관계 기관이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4조의2(교구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등에서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칠판, 게시판 등 교구에 대하여 적용할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구를 사용하는 관계 기관이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구의 종류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현행법¹⁾은 어린이제품을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정의하고,

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성조사²⁾를 할 수 있도록 하며³⁾,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제외한다.
 - 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 나.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 다.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 라.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용기·포장
 - 마.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사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
2. ~ 13. (생략)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안전성조사”란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끼치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5. ~ 13. (생략)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6조(안전성조사 및 위해성평가 정보의 반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는 제외한다.

1. 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1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3. 그 밖에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부장관이 「환경보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조사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어린이제품의 사업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의 방법·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의 보관·열람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안전성조사 결과 해당 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 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⁴⁾.

최근 서울 소재 일부 초등학교의 칠판, 게시판, 체육관 충격보호대 등에서 납, 프탈레이트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검출되면서 논란이 발생한 바 있음⁵⁾.

이와 관련하여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일부 교구는 현행 법체계상 별도의 검사·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예를 들어, 학생용 책상, 의자, 학용품 등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교실 벽지, 목재, 바닥재 등은 「환경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칠판, 게시판 등 교구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규율하는 법

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8조(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제10조(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1.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2. 제9조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한 경우 그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해당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과 공표,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와 비용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경향신문, “교실 칠판에 고농도 납? 서울 15개 초교 비품 92% 유해 물질 주의보”, 2023.12.5.

률이 없는 상황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 예시]

품목	예 시
학용품	색종이, 스케치북, 크레파스, 리코더·실로폰 등
완구	모형전화기, 낱말카드, 클레이점토, 곤충채집도구세트 등
아동용 섬유제품	직업 체험복(소방관 등), 어린이 실험복 등
기타 어린이제품	어린이 도서, 농구공·축구공 등, 막대자, 가위 등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개정안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에서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칠판, 게시판 등 교구에 대하여 적용할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② 교구를 사용하는 관계 기관이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교구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및 어린이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현행법은 “어린이제품”⁶⁾을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칠판,

6)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게시판 등 제품의 형태가 아닌 교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학교보건법」 7)(교육부 소관)은 학교시설에서의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보건법」 8)(환경부 소관)은 초등학교 교실을 포함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마련 등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현행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체계와 별도로 교구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신설할 경우 현행법상 어린이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⁹⁾과는 별도로 교구에 대한 안전기준을 도입하게 되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제외한다.

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나.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다.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라.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용기·포장

마.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사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

7)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 [교사대지(校舍地)·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 ⑦ (생략)

8) 「환경보건법」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이하 “환경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 ⑩ (생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어린이활동공간”이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현행법상 모든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유해화학물질 안전요건, 물리적 안전요

는데,

칠판, 게시판 등 일부 교구의 사례와 같이 어린이제품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주로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등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있는 품목(시설물, 자재 등)¹⁰⁾에 대한 포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의 규율대상(안전관리대상)인 어린이제품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안전기준이 없거나 기존의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품목에 대한 예비 안전기준을 운영하는 등 현행법에 따른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체계에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¹¹⁾.

둘째, 안 제14조의2제1항은 안전기준을 적용할 교구를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린이가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교구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도록 자구를 수

건, 전기적 안전요건 등이 있음)을 준수하여야 하고,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은 개별 안전기준을 추가로 준수하여야 함.

10) 제품의 형태는 아니지만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품목, 어린이 또는 성인 모두가 사용하거나 어린이 또는 성인을 위해서 사용되는 물품 등

11) 참고로, 최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안 발의안에는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안전기준이 없거나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의 안전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비 안전기준 운영”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었으나, 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에 필요한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예비 안전기준을 운영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당 조항은 삭제한 바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참고하여 안전기준이 없거나 기존의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품목에 대한 예비 안전기준을 운영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정할 필요가 있음.

셋째, 안 제14조의2제2항은 교구를 사용하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안전기준의 준수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교구를 사용하는 관계 기관이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교구에 대한 안전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유사입법례¹²⁾와 같이 교구의 제조·수입업자 또는 설치업자에게 안전기준의 준수의무를 부여하거나 교구가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교구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넷째, 개정안은 교구를 사용하는 관계 기관이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

12) 안전기준을 규정한 입법례
「식품위생법」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 ⑭ (생략)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및 사용·운행 제한) ① 건설기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 또는 사용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건설기계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조치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완제품이 아닌 형태로 교실에 설치되는 칠판·게시판 등은 현행법에 따른 KC인증 등 안전관리가 곤란하므로 개정안과 같이 특례 규정 신설을 통해 교구의 종류와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어린이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나, 기존에 현행법에 따라 안전관리되고 있는 어린이제품은 교구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교구의 범위를 “어린이가 사용하는” 교구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구로 확대하는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64